

##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이 수 정<sup>†</sup>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김 민 정

플로리다주립대학교  
형사정책학과

늘어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많은 제도와 법률을 꾸준히 도입하고 개정하며 노력해왔지만, 성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범죄자 처벌에만 중점을 둔 정책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찰 수사력의 효율성, 유죄 입증력의 향상,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는 노력이 미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외국의 경우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음란물과 온라인 성매매에 대처하는지 알아보고, 성범죄자 정보 관리와 수사기법 도입,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경찰 수사력과 유죄 입증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주요어 :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음란물, 온라인 성매매, 재범예방, 성범죄자 정보관리,

---

<sup>†</sup> 교신저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Tel : 031 249 9198, E-mail : suejung@hanmail.net

지난 몇 년간 성폭력범죄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문제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마치 경주라도 하듯 관련 부처와 국회는 새로운 법률들을 쏟아낸 바 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인 원조교제가 문제되자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주소지 등록제도를 신상공개제도라고 명하여 도입한<sup>1)</sup> 바 있고, 용산에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하여 동종전과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사실이 부각되자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였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성범죄가 잇따르자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량을 현저히 높여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sup>3)</sup> 의 무적 양형제도(minimum mandatory sentencing)를

도입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아동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양형기준도 권고기준을 정하여 규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 사건, 김길태사건 등이 잇따르자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우범자 관리제도와<sup>4)</sup> 화학적 거세법이<sup>5)</sup> 도입되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성인 성범죄의 경우에도 친고죄를 폐지함으로써<sup>6)</sup> 이제는 명실공히 성범죄가 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이나 강도와 다르지 않게 강력범죄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에서도 거세약물 뿐 아니라 심리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치료감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신성적장애자들에 대해서는 부정기형 치료감호가 선고될 수 있도록 되었고<sup>7)</sup>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 1)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1년 8월 첫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했다. 이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 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이다. 현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 3) 2008년 5월 22일부터 국회 본회의 일명 ‘혜진·예슬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안 제7조).

- 4) 2009년 11월부터 경찰청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담당제도’는 법원이 선고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해당지역 경찰이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것으로 하여 ‘우범자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 5) 2010년 7월 23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했으며,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되었으나, 2013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된 법률에서는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6)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고소)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3.06.19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삭제되었다.
- 7)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아성기호중(小

표 1. 최근 5년간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월별 발생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년	1,300	1,298	1,678	1,762	2,085	2,127	2,422	2,428	2,020	1,820	1,665	1,429
2010	1,168	1,135	1,567	1,644	1,934	1,938	2,211	2,263	1,868	1,680	1,221	1,310
2009	992	962	1,215	1,402	1,455	1,656	1,663	1,700	1,495	1,358	1,119	1,139
2008	821	799	1,124	1,463	1,581	1,603	1,627	1,501	1,358	1,185	1,066	966
2007	951	852	1,079	1,185	1,339	1,338	1,352	1,383	1,236	1,092	915	912

출처 : 범죄분석 (2012)

사회내처우로서뿐 아니라 시설내처우로서도 300시간의 심리치료를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sup>8)</sup>

문제는, 이렇게 많은 제도와 법률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발생률은 현재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지난 5년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발생건수는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였으며 월별 발생양상도 5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되는, 동일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性的)인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추가하여 2008.12.14부터 시행되었다.

8)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②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3.6.19부터 시행될 개정안에서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징과 대응방안 모색에 있어서의 경찰의 역할

현재 국내 관련 법률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정의할 때 피해자의 연령 기준은 만 13세를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다.<sup>9)</sup>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고 강간·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아동음란물을 통해 성적만족을 얻는 자들을 일컬어 아동성범죄자, 혹은 아동치한범(child molester)이라 지칭한다. 하지만 모든 아동치한범이 곧 소아성애자(pedophilia)인 것은 아니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DSM-IV)(APA, 1994/1995)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소아성애는 “사춘기 이전의 소아나 소아들(보통 13세 이하)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9) 현재 성폭력범죄에 관련한 법률들은 아동대상 성폭력에 관해서 ‘아동’의 연령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 7조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따로 구분지어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일반적으로 19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지속"되는 조건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소아성애(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되려면 적어도 나이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성적 대상자보다 적어도 5세 이상 연상이어야 한다(APA, 1994/1995, 고려진, 이수정, 2008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모든 소아성애자는 아동치한범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sup>10)</sup> 아동치한범이 모두 소아성애자라 볼 수는 없으며, 성인보다는 아동에게 분명한 성적 기호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아동성범죄자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성범죄자를 고착형(fixated)과 퇴행형(regressed)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고려진, 이수정, 2008), 고착형(fixed child molester)은 지속적으로 성적인 매력을 아동에게만 느끼는 반면 퇴행형(regressed child molester)은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아이들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Holmes & Holmes, 2002). 고착형은 청소년 시기부터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를 보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적합한 상대와의 성적 관계를 갖지 못하고 여전히 아동에게만 성적 흥미를 보이기에 일반적으로 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sup>11)</sup> 그러나 퇴행형은 생애동안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면 설사 그 대상이 아동이라도 상대를 통해 성적 만족감을 얻기를 추구한다. 실업이나 불화, 약

물 사용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뿐만 아니라, 불안, 외로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고려진, 이수정, 2008).

아동치한범에 대한 기존의 범죄심리학적 이론은 이들의 심리적 기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발달로 아동음란물이나 조건만남 등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면서, 기존의 이분법적 분류만으로는 아동성폭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굳이 범죄학 이론을 근거로 들지 않더라도 아동을 성 상품화하는 관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데, 이는 아동 음란물 이용과 아동 성폭력 행위가 상관이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경험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 국내 연구로 윤정숙(2012)은 아동 성범

10)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소아성애자에 대하여서는 아동치한범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11) 롤리타 콤플렉스. 중앙선데이 4월 21일자 18면: 일반적으로 소아성애자들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인간관계 기술이 떨어지기에 자존감도 낮고 자기주장도 잘 못하는 수동 공격적 성격을 지닌다고 알려진다. 이들은 또한 두부 외상의 병력이 있거나 뇌의 회백질보다 백질의 비율이 높거나 뇌하수체 활동성이 정상인과 다르다는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12) Seto 등(2001)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포르노가 성범죄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적이 있다. 또한 Quayle 등(2002b)의 연구에서도 아동포르노 소지로 기소된 집단의 경우 아동포르노를 접촉의 대체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동포르노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본 장면을 실행에 옮기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다고도 보고하였다. Holmes 등(2002)은 아동성범죄자들이 일반성범죄자들보다 아동포르노를 보는 경향이 훨씬 높았으며 그들은 아동포르노를 보면서 카타르시스적 느낌을 느낀 적이 있으며 아동성범죄자들의 삼분의 일이 성범죄 직전에 아동포르노를 본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Wolak, Finkelhor, Mitchell(2011)의 최근 연구는 미국 전역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2000년과 2006년 아동음란물과 성폭력 범죄와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6명 중 1명이 아동 음란물 사용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아동음란물을 이용한 4명 중 1명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경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죄자는 일반 성범죄자에 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아동 음란물을 이용하며, 성범죄 직전 아동 음란물을 이용하는 비율도 2~3배 높았다고 밝혔다(윤정숙, 2012). 이에 따라 각국은 앞다투어 아동성매매는 물론, 아동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 그리고 사용까지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 온라인 아동 음란물의 문제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sup>13)</sup>에 의하면, 온라인 아동 음란물의 50% 이상은 미국에서 생산되며,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정부의 관심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전세계 아동 음란물 생산의 2.16%를 차지하는 주요 제작국가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는 점이다(조희정, 2012). 국내의 경우 현재 1초마다 인터넷에 새로 등장하는 음란사이트는 260개이며, 인터넷 다운로드의 35%가 음란물이다. 더욱이 P2P사이트에는 음란물이 2분에 1개씩 업로드 되며, 이 가운데 최소 10% 이상이 아동 음란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 심의에서 아동 음란물 관련 시정 요구를 내린 사례는 2009년 52건, 2010년 93건, 2012년 상반기 31건에 불과하여(조희정, 2012), 아동 음란물의 심각성을 등한시 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음란물의 게시나 유통에 대한 처벌은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에 의해 규제한다. 또한 아동 음란물을 제작·게시·유포(업로드 및 다운로드 포함)할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아청법에 의하면 일반 음란물 소지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주어지는 반면, 아동 음란물 유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런 법률들을 근거로 하여 2010년 9월 음란물이 게시된 웹하드나 P2P사이트 운영자에게 처음으로 음란물 ‘소지’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권단체의 비판여론이 조성되어 강력한 지침을 세우지 못하던 와중에, 2012년 여름 고종석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대적으로 아동 음란물의 단속이 아동성범죄 예방에 꼭 필요하다는 점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시작하였다.<sup>14)</sup> 이에 경찰청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아동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하였다.<sup>15)</sup> 단속의 근거는 2013년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인데,<sup>16)</sup> 이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4) 신문기사

15) 경찰청 인터넷(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계획 안내, 여성가족부 공지·공고, 2013.3.22.

16)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⑤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음란물 유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1조③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조 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

13) 영국에서 1996년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들이 협력하여 설립한 자율규제기관으로, 인터넷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보고한다.

을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처벌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단순소지자에 대하여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경찰은 또한 등록 웹하드 뿐 아니라 개인이 제작하여 올리는 미등록 웹하드, SNS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음란물 모두를 단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에 주로 처벌을 하였으나 아동법 개정안을 근거로 6월 19일 이후부터는 특정인에게 음란물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처벌의 수위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을 다운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그리고 캐나다는 5년의 징역형을 받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는 물론이고 유포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에만 처분이 그치고 마는 관행이, 아동 음란물 단속은 성범죄 예방에 중요한 요건이라는 인식을 희석시키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 행해진 아동 음란물 범죄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Wolak, Mitchell & Finkelhor, 2011b), 2000년에는 전체 아동 음란물 범죄자 중 31%가 아동 성폭력으로 먼저 조사를 받은 후 아동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이 추가되었으나, 2006년에는 처음부터 아동 음란물 소지, 유포, 제작을 이유로 조사를 받은 비율이 12%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이 아동 성범죄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음란물 이용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임을 증명하는 결과로, 이는 아동음란물 이용이 아동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한다.

#### 아동·장애인 성범죄 조사제도 일원화의 문제

아동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성폭력은 면식범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sup>17)</sup>.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즉시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이나 장애인은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청은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함께 성폭력 전담 수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서울에 처음으로 해바라기 아동 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현재 전국 8개 병원과 협조하여 센터를 늘려왔다. 하지만 기존의 해바라기 아동 센터에서는 수사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어 여성가족부는 따로 경찰청과 협조하여 윈스탑지원센터를 세워 경찰이 상주하면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조사에서 의료지원까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현재는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및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로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전국 15개소에서 수사, 법률, 의료, 상담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2010년부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해바라기 통합지원센터 7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산부인과·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한 의료지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여성경찰에 의한 수사 및 법률지원 등을 24시간 One-Stop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다.

전문기관의 설치와 인력의 투입으로 현재

17)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 (2010). 미출판 보고서.

표 2. 피해자 지원 관련 여성가족부 산하 센터

구분	여성 ·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통합 해바라기 여성 · 아동센터
대상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 학교폭력 피해자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 학교폭력 피해자
근무시간	365일(24시간)	09:00 ~18:00 (탄력근무, 재택근무 가능)	365일(24시간)
주요업무	수사 · 법률 · 의료 · 상담	법률 · 의료 · 상담 · 심리	수사 · 법률 · 의료 · 상담 및 심리
개소 수 (2012년 말)	15개	8개	7개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과거에 비하여 암수범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에 따르면 원스톱센터 개설 전후 100일을 비교했을 때 신고건수가 698건에서 1010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sup>18)</sup> 경찰의 조사 과정 역시 대폭 개정되어 표준화된 면담 프로토콜을 사용하고<sup>19)</sup> 민간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sup>20)</sup> 민간 전문인력은 경찰의 조사

과정을 청취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송치 시 함께 제출한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전문가 의견서가 함께 제출되는 경우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기소율 및 유죄판결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이수정, 2011).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 즉시 개선하는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 ·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급속히 변화한 데 비하여 가해자 조사는 여전히 형사과의 업무였다. 과거 성폭력수사전담반을 꾸려 성범죄사건에 대한 수사효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성과에 대

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4/2012122400077.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4/2012122400077.html)

19) 현재 원스톱센터에서는 미국의 미국 보건부 산하 국립아동보건간개발연구소(NICHHD)에서 권고하는 면담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20)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 즉시 개선하는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3조④ 단서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 ·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전담수사관으로 지정된 수사관들 중 대부분, 즉 전국 16개 지방청 성폭력 전담 조사관 3445명 중 2457명인 70.1%가 성폭력수사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어, 성폭력 전담수사관이라는 명칭을 무색케 하고 있다.<sup>21)</sup>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경찰청은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전담하는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출범하였다.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를 전담하던 ‘1319팀’을 확대 개편한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신설되고 추후 기존 생활안전과 내 여성청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과’로 격상한 후 여청과 소속 계단위로 편제되었다. 지금까지는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 수사는 원스탑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조사를 토대로 가해자가 명확히 판명됐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진행하였지만,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처음부터 원스탑센터와 함께 가해자 판명 여부와 관계없이 광역 단위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sup>22)</sup>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가해자·피해자 조사는 형사팀, 피해자 분리·보호는 여성청소년과가 맡아서 하다보니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일원화 되어 진행된다. 피해자 보호도 특별수사대가 담당한다. 수사 절차의 일원화 이외에도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는 신상등록자들에 대해 주소지 변경사항이나 소재불명자들에 대한 추적 관리들을 좀 더 철저하게 집행할 예정이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찰청은 2015년까지 879명을 증원하여 수사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하였다.<sup>23)24)</sup>

이렇듯 성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끊임이 없었지만, 그동안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전담기구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09년 ‘조두순 사건’에서도 ‘성폭력 범죄자 1대 1 전담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성과가 미미하였으며, 또 2010년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특별수사대를 편성했다가 8개월 만에 해체시켰다.<sup>25)</sup> 최근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통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던 업무상의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업무를 일원화시킨 것은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2013년 신설된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기존과 같은 포폴리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시스템과 인력투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 방안, 성범죄 전문 수사인력 양성, 아동 성범죄 유도수사와 같이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사기법 도입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자세한 대책에 대해서

21)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p1=&subMenu=9&nwYn=1&query=#liBgcolor2>

22) 서울뉴스, 경찰 전국에 성폭력특별수사대 27일 출범. 2013.2.18.

23) <http://www.korea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3>

24)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56905>

25)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9/h2012090321421021950.htm>



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논의’에서 다 루도록 하겠다.

#### 방과 후 아동 보호와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대검찰청(2010) 자료에 따르면, 아동성폭력 발생장소는 주거지 44.8%, 노상 16.4%, 유원지 6.2%, 기타 32.6%로 나타났으며, 발생시간은 오후 시간대인 12시-6시 사이로 57.9%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2010)의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 장소는 놀이터, 옥상, 지하실, 숙박업소 등 공공장소가 가장 많았으며,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학원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3세 미만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오후 시간대에 피해자 집과 집주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사실이 유추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가 바로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즉 CCTV 부착과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아동보호시설의 확대, 학교 등에 안전요원(학교보안관) 배치 및 자율방범대 설치 등의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특성은 정부주도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경화 및 피해자 보호정책에 더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범죄예방을 강화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범죄예방이 국가와 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증연구들(김인, 1997; 김연수, 2008, 이주락, 2008; 정승민, 2009; 민영성, 김병수, 2009; 박철현, 최수형, 2009; 임민혁, 홍준현, 2008; 조일형, 권기현, 2011)은 범죄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의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일형, 권기현(2011)은 경찰 관련 변인으로는 경찰인력과 순찰차 수, 민간 활동 차원의 변인으로는 자율방범대의 수, 사회환경 변인으로는 방범용 CCTV의 수가 성범죄를 억제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들 또한 연구 구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범죄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이효과에도 불구하고 범죄통제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들이 의미하는 바는 경찰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이 방과 후 아동의 보호에 어느 정도까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청소년 성범죄 관리대책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2000년 범죄분석(대검찰청)에서는 513건을 차지하였던 것이 2010년 범죄분석(대검찰청)에서는 1574건을 차지하여 약 300% 정도 늘어나, 매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중 11%를 차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0대 성범죄 가해자 수는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11.5명으로, 1.1명에 그치고 있는 일본보다 10배나 많은 수치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성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증가 추세 못지않게 청소년의 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환경의 결핍이 주된 이유라고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이혼자 수는 1990년에는 1.1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2.3명이 되어 약 200%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이혼가정에 미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나 여전히 2010년 63%에 이르는 이혼가정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보자면 과거에 비하여 부모의 결핍이 미성년 자녀의 보호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비행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송원영, 2012).

아동·청소년의 보호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청소년이 가출 등 위험상황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주요 이유가 되는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기능 상의 문제가 청소년의 성범죄 발생을 매개한다고 알려진다. 송원영(2012)은 가족의 응집력 결핍이 청소년들에게 외로움을 느끼도록 하여 성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 같은 경험론적 인과관계는 어릴 때부터 성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심리사회적 기능상의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물들(Barbaree, Marshall, McCormick, 1998; Barnett, Miller-Perrin, & Perrin, 1997; Starz & Marshall, 2003)과 맥을 같이 한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하여 불안이나 우울, 공감능력의 결핍, 자기중심성, 외로움, 자존감 결핍 등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며 이들의 성인지는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 있고 사회기술의 부족과 그로 인한 또래 압력도 심한 것으로 확인된다(Perry & Orchard, 1992; Rich, 2003).

최근에는 인터넷 등 모바일기기가 상용화되면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물 중독으로 추정되며, 2008년도 성매매로 검거된 청소년들의 94%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대구 YWCA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매체는 인터넷이 85.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음란물 중독은 잘못된 강간통념을 형성하는데, 음란물 접촉을 많이 한 청소년일수록 피해자가 강간을 즐긴다는 잘못된 강간통념의 수용도가 높으며,<sup>26)</sup> 이러한 성태도의 왜곡이 청소년 성범죄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된다.

#### 인터넷 성매매로 인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 급증

청소년의 성범죄 증가하는 원인은 보호환경의 변화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중독 외에도 청소년 성매매가 이전에 비해 훨씬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터넷을 통한 채팅이 청소년 성폭력의 피·가해 상황을 더욱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앱이 등장하면서 청소년 음란물 유통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sup>27)</sup>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채팅앱은 100여개가 있다고 한다. 그 중 회원 수가 약 60만 명인 A 채팅앱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7월 13일부터 한 달간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으로 성매매를 암시한 메시지를 전송한 성인 남성은 약 1만 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8월 8일부터 6일간 서울·경기지역에서 570여명의 성인 남성이 자신의 성기사진을 10대 여성청소년에게 1만7000여건이나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기도 했다고 한다. 더욱이 돈을 준다는 등의 속임수를 이용하여 200여명의 아동·청소년으로부터

26) 대구 YW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2007).

27)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410>

가슴, 성기사진과 음란행위 동영상까지 8700여 건을 전송받았다고도 한다.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근에 있는 상대방과 익명으로 무작위로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등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매매춘 시스템, 소위 ‘랜덤채팅’으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경찰은 사실상 이를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sup>28)</sup> 이유인즉슨 인터넷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남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알선책과 성매수 남성을 검거할 수 있지만 랜덤채팅은 채팅 앱 개발업체를 적발하더라도 그 서버엔 접속자 관련 기록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데, 스마트폰 기기의 고유 주소가 통상 10일~1개월만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이다.

최근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 같은 성매매 시스템에 노출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피해경험으로 발을 들여놓지만 점차 성매매 가해자로서 변해간다는 것이다. 10대 소녀들이 간단한 앱으로 유흥업소 같은 성매매 업체의 도움 없이 직접 성매수 남성을 구한 뒤 자신보다 어린 아동들을 내보내 포주 노릇을 하기도 한다.<sup>29)</sup> 2013년 4월 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열악해진 보호환경으로 인해 가출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가 되고, 또 성매매 가해자로 변모해가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청소년들은 소위 가출 ‘팸’을 구성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위 성을 구매할 남성을 물색하고 또

상대남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2차 범죄를 저지른다.<sup>30)</sup>

현재 정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성매매”와 “성매매피해자”를 규정하는 조문을 두고<sup>31)</sup> 윤락행위를 하는 여자 청소년들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적용하여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여자 청소년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 및 가해 현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경우, 인터넷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려고 시도만 한 경우에도, 인터넷 상의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수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誘導)수사를 허용하는 등 청소년 정보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유도수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지만 수사와 범죄입증이 어려워 검거하지 못했던 미성년자 성폭력범을 처벌하고 청소년이 범죄 피해자가 되기 이전에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외국의 인터넷 성매매 단속 현황

미국 연방법은 ① 미성년자로 하여금 상업적 성행위, 즉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 또는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② 미성년자와 금지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타

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6/201304160023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6/2013041600234.html)

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6/201304160023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6/2013041600234.html)

30)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비열한 거리’ 2013년 4월 6일.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인을 유혹, 고문, 제의하기 위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③ 음란물 생산의 목적으로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 또는 강요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미성년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도록 권유하거나, 미성년자로 하여금 음란행위에 관여하도록 권유하기 위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를 미성년자 성폭력 가중처벌 사유로 규정하였다(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2010). 이 법안은 1987년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그 세칙이 총 10차례 개정, 보완되며 완성되었다. 이 법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컴퓨터 등을 통해 시도하는 일련의 유인(grooming) 행위를 포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003년 제정된 아동보호법(Protecting Children against Crime)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수사에 있어서 수사관들이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도청장치와 같은 감시도구 사용과 함정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하였다. 또한 아동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금융연합(Financial Coalition Against Child Pornography: FCACP)과 사이버팁라인(Cyber Tip Line)이 미성년자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행위를 법집행기관에 보고하는 등 경찰 수사를 조력하고 있다. 사이버팁라인은 24시간 운영하는 핫라인으로서 FBI와 협조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활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여부를 결정해 사법 당국에 보고하는 정부-민간 파트너십 형태의 자율기구이다. FCACP는 가입 단체끼리 정보를 공유해 유해 정보와 불법 활동을 추적하고 법집행기관에 보고하는 의무를 가진다. 즉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웹

에 올라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연관된 유해 정보나 불법 활동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만일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첫째 신고 소홀의 경우에는 5만 달러, 두 번째 신고 소홀의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다. EU는 '1998년-2001년 조직범죄에 대항하는 유럽 연합 행동계획 권고'에서 인터넷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문제는 법에 의한 처벌보다 관련 사업자들의 자주적인 규제와 사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다. 영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와 인터넷 콘텐츠 공급자(예: 포털사이트)들이 등급제, 검색 제한, 모니터링과 같은 자율규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EU 회원국 간의 공조를 통해 유럽 전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ISP들은 미성년자음란물, 성매매, 유인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에서 행해지는 범죄행위를 인터넷 감시재단(IWF: Internet Watch Foundation)이라는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sup>32)</sup> 인터넷 감시재단은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경찰에 보내 수사하도록 의뢰한다. 경찰은 ISP와 협조하여 음란물의 발신처를 추적하고, 발신처가 해외인 경우 자료를 국가범죄정보국(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에 제공하여 관련 국가의 사법기관과 협력한다(Akdeniz, Taylor, & Walker, 2001). 영국 인터넷 감시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인터넷 업체들의 자율적 규제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영국 내 아동·청소년 음란물 문제는 상

32) <https://www.iwf.org.uk/report>

당히 개선되었다.<sup>33)</sup>

## 일반 성범죄 관리대책

### 우범자 관리 및 성범죄 예방활동

이미 출소한 성범죄 누범자들에 관하여서는 2005년도에 제정된 경찰청의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중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2조4항)을 근거로 관리를 실시한다. 이 예규에는 경찰서장이 수사(형사)과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선 지구대장은 첩보수집 대상자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첩보수집 보고를 3개월에 1회 이상 올리도록 하였다.

2010년 부산에서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청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한층 높인 대응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① 아동(13세 미만) 성폭력 전과자 가운데 금고형 이상을 2회 이상 받은 자 ② 청소년(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과자 중 금고형을 3회 이상 받았거나 2회이지만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 ③ 성인 대상 성폭력 전과자 중 금고형을 3회 이상 받은 자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경찰서의 담당 형사와 일선 지구대 담당 직원이 이중으로 관리하고 첩보 보고 주기도 월 1회로 단축시켰다. 중점관리가 아닌 일반 첩보수집도 성폭력 전과자에 한해 종전 ‘금고형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자’에서 기준을 강화, 아동은 1회, 청소년과 성인은 2회 또는 1회로 하되 재범 위험자로 대상을 늘렸다. 또한 살인, 조직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재범 우려가 있는 경

우 재범 위험과 사회생활 적응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 폭력범죄 우범자들에 대한 전반적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표 3).

하지만 우범자 관리는 근거가 되는 모범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범자를 직접 대면하여 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주변 탐문에만 그쳐 사실상 중점관리 대상자들의 문제행동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범을 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더욱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6조 3항에는 첩보를 수집할 때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명예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범자의 민원 제기 시에는 담당 경찰의 업무 수행이 적절했음을 소명할 법적 근거조차 취약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우범자 관리제도만으로는 형을 종료한 성범죄 누범자들의 재범억제에 적극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결성된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아동 ·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조사제도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2개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들에 대한 추적수사도 전담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신상등록이 되지 않은 우범자에 대한 추적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업무까지 담당한다고 하니,<sup>34)</sup> 인력배치와 인력의 전문성, 주어진 업무량과 업무 내용을 비교해볼 때, 한시적인 대응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의 세부화가 필

33) <https://www.iwf.org.uk/report>

34)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56905>

표 3.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 지침<sup>35)</sup>

구분	내용
중점관리대상자	관할 지구대 경찰이나 경찰서 담당자가 우범자의 최신 동향을 1개월에 한 번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li> <li>·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li> <li>· 19세 미만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2회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li> </ul>
첩보수집대상자	관할 지구대 경찰이 우범자의 최신 동향을 3개월에 한 번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li> <li>·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li> </ul>
자료보관대상자	관할 경찰서에서 우범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제3조제2항제4호(첩보수집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li> </ul>

요하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성범죄자 DNA DB 구축 및 공소시효의 폐지

조두순사건과 김길태사건, 그리고 김수철사건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연유로 표류하여 오던 성범죄자 DNA 보관법이 2010년 1월 25일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김혜경, 2010).

최근에는 나아가 2012년 8월 2일부터 만 13살 미만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강간 또는 준강간)에 관하여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

부터 진행이 되도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0조 제1항이 신설되었다. 더욱이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sup>36)</sup> 제20조 제2항 역시 신설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앞으로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된 DNA 증거를 확보하였을 시에는 공소시효에 제한받지 않고 기존에 구축된 성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나아가 박영선 의원은 지난 1월 DNA신원확인정보 관련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5) 2012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 제3조(우범자의 구분)에 명시되어 있다.

36)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4월 15일에 제정되었다.

하 ‘국과수’)으로 환원함으로써 DNA감식 전문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하는 체계적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10년 법무부 주도로 DNA법이 제정되면서 DNA신원확인 정보의 사무관장이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으로 이원화되어 성범죄자의 DNA를 경찰이 확보하였음에도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하는데 지연이 되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만든다는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근거로 삼은 것이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경찰의 DNA신원확인 업무를 국과수로 환원함으로써 DNA 정보가 전문기관에서 관리·활용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학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일선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만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경찰의 성범죄자 수사는 더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논의

#### 경찰의 유도수사

현재 한국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수사는 이미 사건이 일어난 후 혹은 성폭력 행위 그 순간의 증거를 확보하여야만 범죄자 검거가 가능하다. 이 경우, 범행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라도 아동의 피해는 막을 수 없다. 범죄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아동 보호와 경찰 수사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범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전정보의 입수만으로도 그 정보가 범죄행위의 증거로 채택되어 검거와 처벌의 이유가 되는 아동유인방지법(Anti-Grooming Law)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도 3월 29일 “유도(誘導)수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랜덤채팅이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되기 때문과 무관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미성년자를 가장해 성 매수를 제안해 오는 남성을 유인·검거하지 않고서는 온라인 성매매 사범을 검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의 경우 아동유인방지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도수사의 많은 부분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합정수사의 방식과 중첩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유도수사는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의를 유발하는 합정수사’가 아니고, 이미 범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른 분야에서도 판례로 인정된 수사기법이라 설명하면서, 현재 마약사건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제공형 유도수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sup>37)</sup>

영국(2003)의 경우는 아동유인방지법(Anti-Grooming Law)을 제정하여 경찰관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가상의 아이디를 만들고 합성사진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든 다음 6개월 내지 1년 동안 청소년 관련 사이트에서 여성청소년인 것처럼 활동한다. 범죄자들이 채팅을 시도하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만날 약속을 하고 현장에서 만나러 온 범죄자를 수사·검거하고

37) <http://news1.kr/articles/1069199>

있다. 호주도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아동유인방지법을 시행하여 2004년 2월 성학대를 목적으로 13세 소녀를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유인하던 26세 청년을 검거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바로 그 ‘소녀’는 사실 함정수사 중에 있던 경찰관이었다. 나아가 호주는 각종 인터넷 관련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경찰의 함정수사를 진행하였다(Cyberspace Research Unit, 2003). 호주의 하이테크 범죄센터(High Tech Crime Centre)는 아동성범죄와 아동 음란물에 관련한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캐나다와 공조하여 함정수사를 진행한다. 함정수사의 목적은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동과 접촉하고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가 아동성폭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며, 이들로부터 아동의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Taylor & Quayle, 2003).

스코틀랜드(2005) 역시 비슷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16세 이하의 아동을 만나거나, 만나려고 집을 나서거나, 만나기 위한 약속을 한 자, 아동과의 불법성행위를 시도한 자를 최대 10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성폭력에 이용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피임도구 등 성행위에 관련한 도구가 나왔거나 성행위 시도 전의 대화내용을 범죄행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 16세 이하의 아동을 16세 이상이라고 믿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유죄 입증력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이후 영국의 아동유인방지법은 싱가포르(2007)와 스웨덴(2009)의 관련법 제정의 모태가 되었다.<sup>38)</sup>

38) <http://www.singaporelawreview.org/2007/12/anti->

외국의 사례나 국내 사정을 고려하자면 경찰의 유도수사는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유인방지법’이 채택되는 경우 성매매를 제안하는 남성들에 대해 보다 높은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성매매는 미성년자들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인데, 피해경험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가해자로 돌변하는 이 현상을 차단하려면 소년법상에 명기된 교육과 선도의 기능 등이 대폭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 성범죄자 정보 통합 및 구체적 관리방안 모색

그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제도<sup>39)</sup>는 장치 부착 결과에 따른 재범률 감소, 위치추적 대상자의 태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전자발찌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 전자발찌 착용 후 재범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8월 23일 현재 동종재범 건수 30건 중 1건을 제외한 29건이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으로 나타나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자감시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 전자장치의 상태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송신되고,

[grooming-law-the-first-step/](#)

39) 현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로 2012년 12월 18일에 법 이름이 개정되었다.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련 정보를 수신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범행을 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 체계도 긴밀하지 않아 관할 경찰서 등은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관련 정보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이혜미, 2012). 이는 현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으로도 함께 지적할 수 있다. 동법에 따르면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판결문,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 수신자료 등은 피부착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이 관리하게 되고, 특정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범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출동 등 초동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전자감시제도 시행 전·후에 재범률이 감소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는 범죄 특성상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만큼 전자발찌 착용 외에 추가 감독, 치료프로그램 외에 의학적 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발찌 부착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원정보를 알려 평상시에도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우범자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사이에 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혜미, 2012).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서는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관할 경찰서장이 감독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반기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담당 경찰은 꼭 주소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꼭 기소를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sup>40)</sup> 2010년부터는 19세 이상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역시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반기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주소 및 차량번호 등에 대하여 매번 담당 경찰은 전산조회시스템 확인하고 직접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출장 관리를 해야 하며 주변 탐문을 통해 생활태도에 대하여 관찰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성범죄자가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주변인들이 추측할 수 있는

40) 2013년 6월 19일에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제 45조④에서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0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된 지도이다. 이 같은 지도를 만일 일선 지구대에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서진환사건 등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다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치안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계속 갱신이 되어야 할 것이란 점이다.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등록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우범자, 신상공개 대상자,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있다면 이 같은 지리적 정보는 사실상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친족 강간과 피해자 보호의 문제

최근 대전에서는 신변 보호 요청을 한 뇌성마비 중증장애 여성 최모(38)씨가 자신을 폭행해 징역형을 살았던 성모(61)씨에게 살해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1997년부터 6년간 미인가 장애인 수용시설을 차려놓고 최씨 등을 데리고 살면서 폭행을 일삼았고, 이 사실을 최씨는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후 징역을 살고 나온 성씨는 최씨를 찾아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했고, 최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석 달 만에 살해당한 것이다. 이렇게 신고자와 증인에게 양심을 품고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 범죄는 2006년 70건에서 2007년 85건, 2008년 87건, 2009년 139건, 2010년 124건, 2011년 122건, 2012년 (8월 현재) 142건이다. 7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현 시스템에서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보호받고 싶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변 보호 여부와

보호 수준을 결정한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 절차도 까다롭고, 심의위원회도 즉각 열리지 않는다. 신변 보호 요청이 내려진다 해도 전담 인력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신변 보호는 지구대에서 맡게 되는데 늘 신고받는 즉시 출동해야 하는 지구대원들이, 한 사람을 24시간 신변 보호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무부에서는 삼성 에스원과 MOU를 맺고 4억이라는 국고를 들여 신변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sup>42)</sup>

미국에서는 1982년 연방정부에서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을 제정해 범죄 피해자와 증인에 대해 피의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 중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건 관련자와 그 가족들은 ‘안전’을 보장받는다. 기존의 사회보장번호(주민등록번호에 해당)를 없애고, 새 이름과 새 신분증, 새 집, 새 일자리 및 생활비까지 지급된다. 필요에 따라서 성형수술 비용까지 지원한다. 각 주의 경찰국에도 ‘피해자 지원부서’를 설치해 범죄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sup>43)</sup>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절박하게 필요한 사건 중 하나는 친족성폭행이다. 최근 5년간 친족성폭행 범죄 건수는 총 1,758건에 달하며, 가해자 10명 중 8명(79.6%)은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한다. 친족성폭행의 경우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가 친부인 경우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 문제가 되곤 한다. 친부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처벌의

4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70300005&code=94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70300005&code=940301)

4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5/2013010500137.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5/2013010500137.html)

종료 후 가족에게 돌아와 재차 괴롭힘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꼭 필요하다.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와 제15조를 근거로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 신고 또는 후견인 해임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친권 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 후견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보호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44)</sup> 하지만 실상을 보면, 친권상실을 청구한 건수는 최근 3년간 54건에 그치고 있다.<sup>45)</sup> 또한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찾아가갈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데, 여성가족부가 설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용 쉼터는 현재 전국에 세 곳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일반 아동보육 시설이나 성인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쉼터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 이마저도 일정 기간 후 시설을 떠나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sup>46)47)</sup>

## 결론 및 논의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발생건수는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44) 2013년 6월 19일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제23조 제24조에 규정.

45)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h2011112102340021950.htm>

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90317515&code=94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90317515&code=940301)

47) 친족 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만 18세 까지 전용 쉼터에 머물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 쉼터는 현재 2년까지 머물 수 있다.

역시 인구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범죄분석, 2012). 성폭력의 심각성과 난폭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마다 많은 제도와 법률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법조항을 개정하며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성범죄 발생률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 성매매와 아동음란물 사용,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성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방안을 알아보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현황 중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범죄로, 아동음란물 이용과 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 활성화로 분석된다. 아동성폭력과 아동음란물 시청과의 상관성은 국내외 많은 연구들(윤정숙, 2012; Bourke & Hernandez, 2009; Hald, Malamuth, & Yuen, 2010; Seto et al., 2011)에 의해 입증된 바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아동음란물 이용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원활한 수사를 위한 법안과 기술 도입이 병행되지 않아 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유인방지법을 알아보았는데, 이 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한 시도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고, 유죄 입증력과 수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수사의 활용을 허가하였다. 이 법안을 도입할 경우, 범행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라도 범행 현장이나 범행 이후의 증거만이 효력이 있어 아동의 피해를 막을 수 없었던 현실에서 벗어나, 위협에 처한 많은 아동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조사, 진술 신빙성 및 증거 입증력 향상을 위한 조사제도의 일원화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현재 경찰이 이를 위해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그에 걸맞은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신상정보대상자만 관리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형을 종료한 성범죄 누범자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정보를 통합하고 일선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등에 관련한 법 제정 역시 고무적인 일로 여겨지나, 성범죄자 DNB 구축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관련법의 정비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청소년 성범죄의 특징은 청소년가해자의 증가와 성매매 피해자의 증가로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해 가출 청소년은 20만 명에 이른다.<sup>48)</sup>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출 청소년의 25.5%가 9~13세라는 것과 가출 기간이 점차 길어진다는 사실이며, 이와 함께 비행청소년 인구도 최근 증가추세에 있고 최초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소년범은 2002년 2564명에서 2011년 3924명으로 늘었다.<sup>49)</sup>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

정 내의 문제 등으로 가출을 한 청소년들은 주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가 되고 차후 더 어리고 약한 또래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성매매 포수가 되는 길을 선택한다.<sup>50)</sup>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은 비행이나 범죄의 주요 매개물이 되고 있으며 조건만남 등을 통하여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오프라인 상의 성범죄 단속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랜덤채팅으로 인한 성매매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기업이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나 유인 행위를 신고하고 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실례를 보자면 ‘랜덤채팅’이라는 앱을 이용해 무작위로 채팅을 하며 아동·청소년들에게 조건 만남, 원조교제 등을 제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감지되고 있으나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는 다르게 스마트폰 기기의 고유인식 주소가 10일~한 달 사이에 모두 삭제되기에 IP를 이용한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 영국, 미국의 경우처럼 ISP와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게 검색 제한, 등급제, 모니터링을 하도록 법을 제정한다면, 이 법을 그대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랜덤채팅’ 앱 개발자는 콘텐츠 제공자에 속하게 되며, 각 통신사(SK, KT, LG U+)는 ISP에 해당하게 되므로 등급제, 검색

48)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2002305421950.htm>

4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15011019>

50) 김고연주 (2012).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6016&section=sc1](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6016&section=sc1)

제한, 모니터링의 시행이 더 큰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방과 후 아동의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와 경찰의 협력하여 CCTV 부착과 아동보호시설의 확대, 안전요원 배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면 아동대상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복범죄와 친족에 의한 성폭력으로부터 위협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용쉼터는 전국에 세 곳밖에 없으며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마저도 이용이 여의치 않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윤리의식의 발전 속도가 더딘 점이 문제인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경화를 성토했는 반면 아동음란물 이용 금지에 대해 반발하는 처사는 정부가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밀접한 관련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일반적인 음란물에 대해서는 표현, 언론, 출판의 자유 등과 관련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엄하게 금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므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합정수사까지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실증적 연구들이 아동음란물과 아동에 대한 2차 성폭력의 밀접한 인과성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강은영, 김한균, 이원상 (2010).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 분석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고려진·이수정 (2008).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간의 특성 비교: 인구통계적 변인과 범죄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1-19.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김상운, 조현빈 (2011).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2), 273-283.

김혜경 (2010). 유전자정보수집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형사법연구, 22(3), 236-238.

대검찰청 (2010).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1).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2). 범죄분석.

민영성, 김병수 (2009).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예방. 법학연구, 50(2), 203-233.

박철현, 최수형 (2009) 서울시 강남구의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 첫 신문 보도 시점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79(0), 217-242.

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2010). 미출판 보고서.

송원영 (2012). 가족응집력이 성범죄 청소년의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217-227.

윤상민 (2004).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15(4), 39-74.

- 윤정숙. (2012). 아동 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법무부.
- 이수정 (2011).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전문가 참여가 기소율과 유죄판결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5(1), 111-138.
- 이혜미 (2012).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23, 1-4, 국회입법조사처.
- 임민혁, 최준현 (2008) 방법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정책의 방향.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77-101.
- 전소희 (2010). 아동포르노그래피 관련 제도의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일형, 권기현 (2011). 서울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이분산성을 고려한 패널 데이터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5(2), 439-467.
- 조희정 (2012). 온라인 아동 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 이슈와 논점, 522, 1-4, 국회입법조사처.
- Akdeniz, Y., Taylor, N., & Walker, C. (2001). State surveillance in the age of information and rights. *Criminal Law Review*, Feb., pp.73-90.
- Bourke, M. L., & Hernandez, A. E. (2009). The “Butner Study” redux: A report of the incidence of hands-on child victimization by child pornography offender.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 183-191.
- Cyberspace Research Unit (2003). Response to the National Crime Squad’s announcement regarding the launch of Operation Pin. [www.uclan.ac.uk/host/cru/docs/crupr18122003.doc](http://www.uclan.ac.uk/host/cru/docs/crupr18122003.doc)
- Hald, G. M., Malamuth, N. M., & Yuen, C. (2010). Pornography and attitudes supporting violence against women: revisiting the relationship in nonexperimental studies. *Aggressive Behavior*, 36(1), 14-20.
- Seto, M. C., Hanson, R. K., & Babchishin, K. M. (2011). Contact Sexual offending by men with online sexual offense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3, 124-145.
- Taylor, M. & Quayle, E. (2003). *Child pornography: an Internet crime*. Hove: Brunner-Routledge.
-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2010). <http://www.ussc.gov>
- Wolak, J., Mitchell, K., & Finkelhor, D. (2011) Methodology Report: Third National Juvenile Online Victimization (NJOV3) Arrest Study. Crimes against Children Research Center.
- Wolak, J., Mitchell, K., & Finkelhor, D. (2011) Methodology Report: Third National Juvenile Online Victimization (NJOV3) Sexting Study. Crimes against Children Research Center.

1 차원고접수 : 2013. 5. 15.  
 심사통과접수 : 2013. 5. 27.  
 최종원고접수 : 2013. 6. 03.

## **Police Strategy against Child Sexual Molestation**

**Soo Jung Lee**

Forensic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Minjung Kim**

Criminal Justice,  
Florida State University

Although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resolve the sex crime against children, adolescents, disabled people, and adult women, sex crime has been still increasing and more brutalized. The main cause would be the policy that only focuses on punishment, not prevention or police investigation. To figure out how police can deal effectively with sex crime,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fferent types of sex crime, such as sex crime against children, adolescents, and typical form of sex offenses. Nex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another countries, such as USA and UK, make an endeavor to enhance efficiency of police investigation and conviction rates. In addition, we introduces Anti-grooming laws implemented in such countries in order to watch out sex crime against children even internet activities. Finally, this study sheds a light to policy makers and police investigators, who tries to reduce sex crime and to protect potential victims.

*Key words : management of sex offender information, child pornography, on-line prostitution, recidivism prevention*